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2016. 1. 26.

 대한상공회의소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2016. 1. 26.

 대한상공회의소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 2016년 1월 26일(화) 09:00 ~ 10:4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대한상공회의소

■ 프로그램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09:00 ~ 09:08 기념촬영

09:08 ~ 09:10 국민의례

09:10 ~ 09:15 개회사 박용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09:15 ~ 09:27 축 사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문재인 대표(더불어민주당)
심상정 대표(정의당)
유일호 부총리

09:27 ~ 09:32 주요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이동근 상근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09:32 ~ 10:17 각 분과 연구결과 발표 회의주재: 이영선 부의장(국민경제자문회의)
(1)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프레임 개선방안
(김태운 규제개혁위원회 간사·한양대 교수)
(2) 한국 기업문화 선진화 방안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3)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김현수 서비스사이언스학회장·국민대 교수)

10:17 ~ 10:39 종합토론

10:39 ~ 10:40 마무리말씀 박용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10:40 폐 회

주요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6. 1.

이 동 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I

추진배경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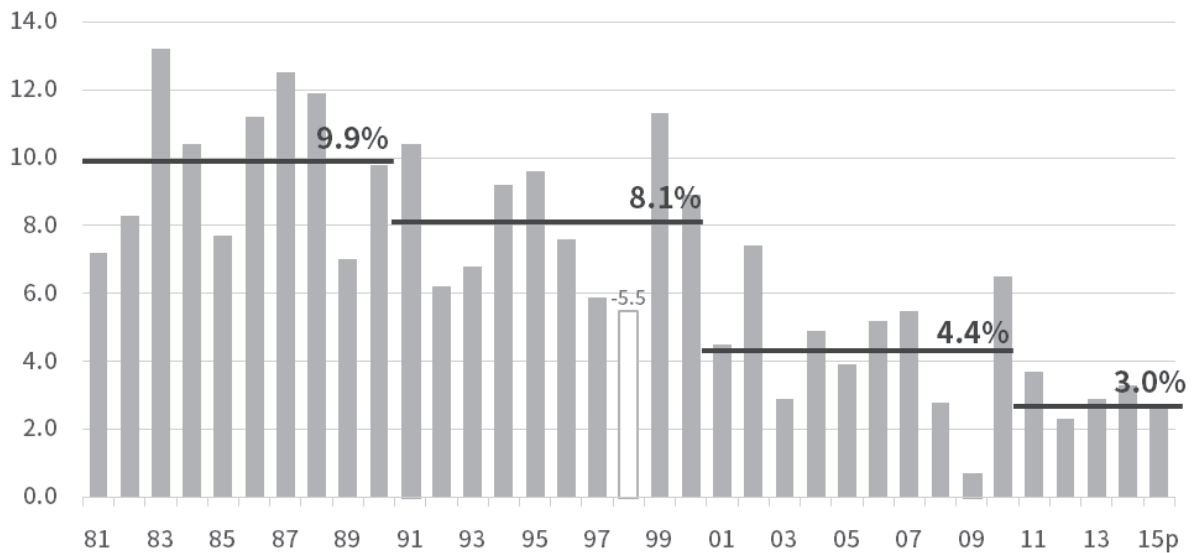
추진경과

III

향후계획

Korea Deceleration: 경제성장을 하향세

실질 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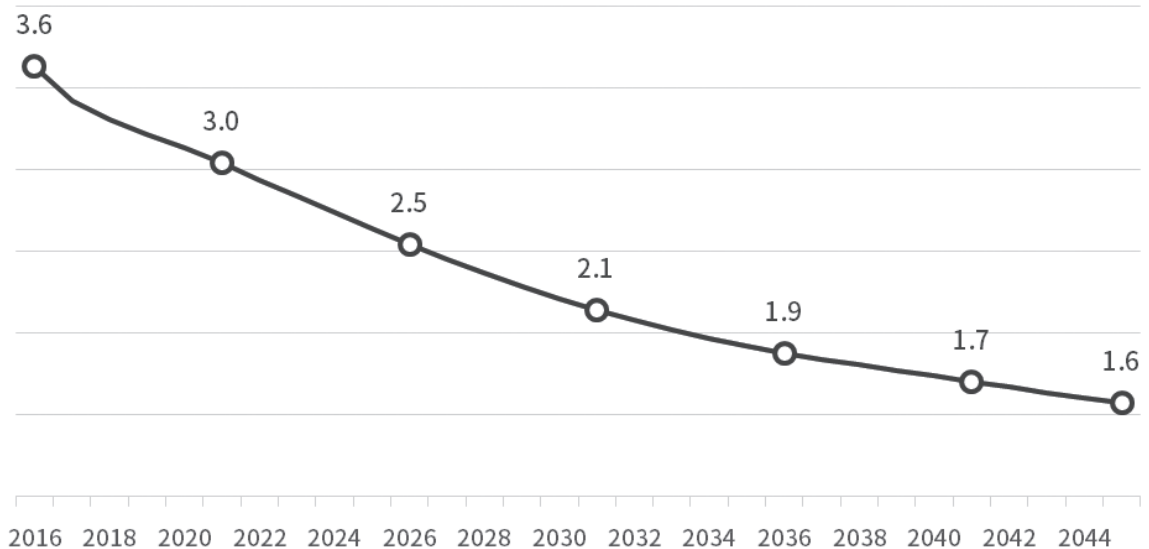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Growth Potential is also Declining: 성장잠재력도 하향

잠재성장률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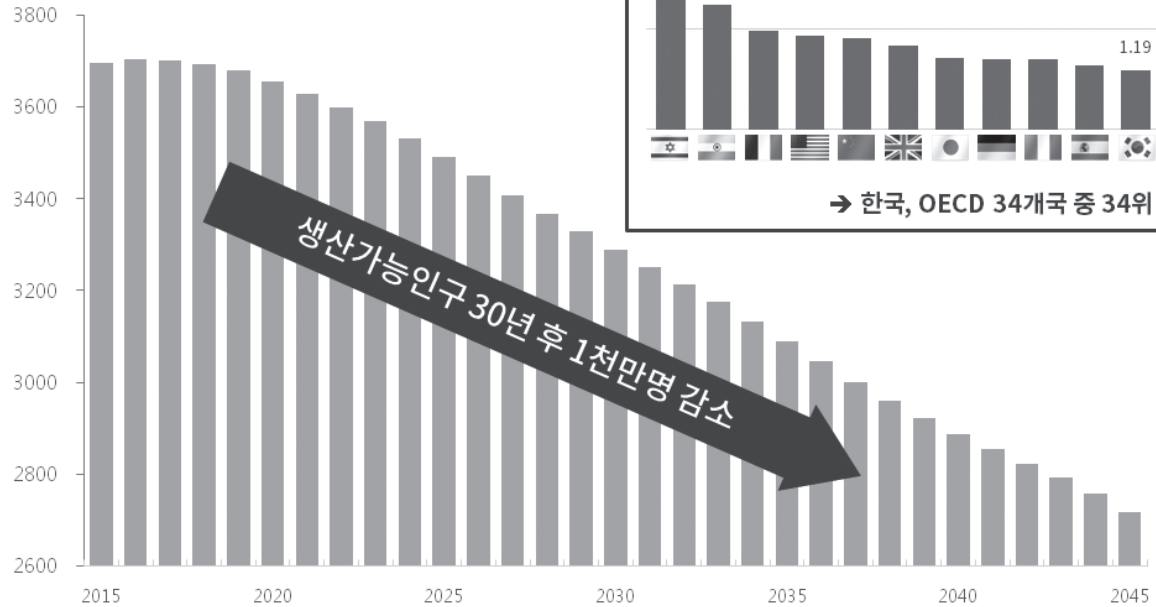


자료 : OECD

3

Structural Problems: 초고령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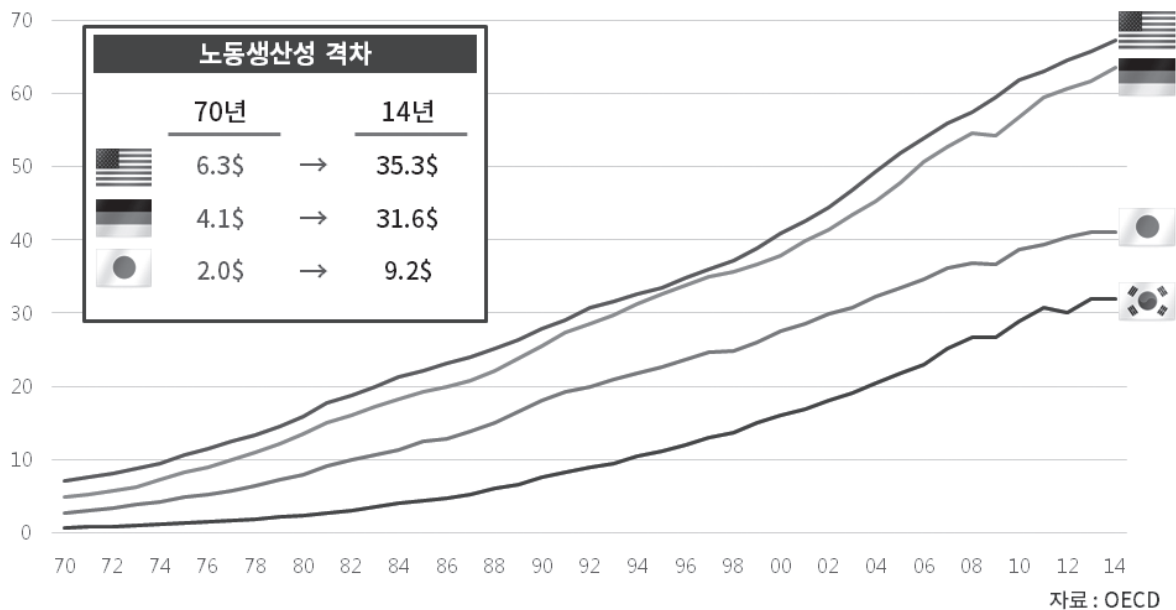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만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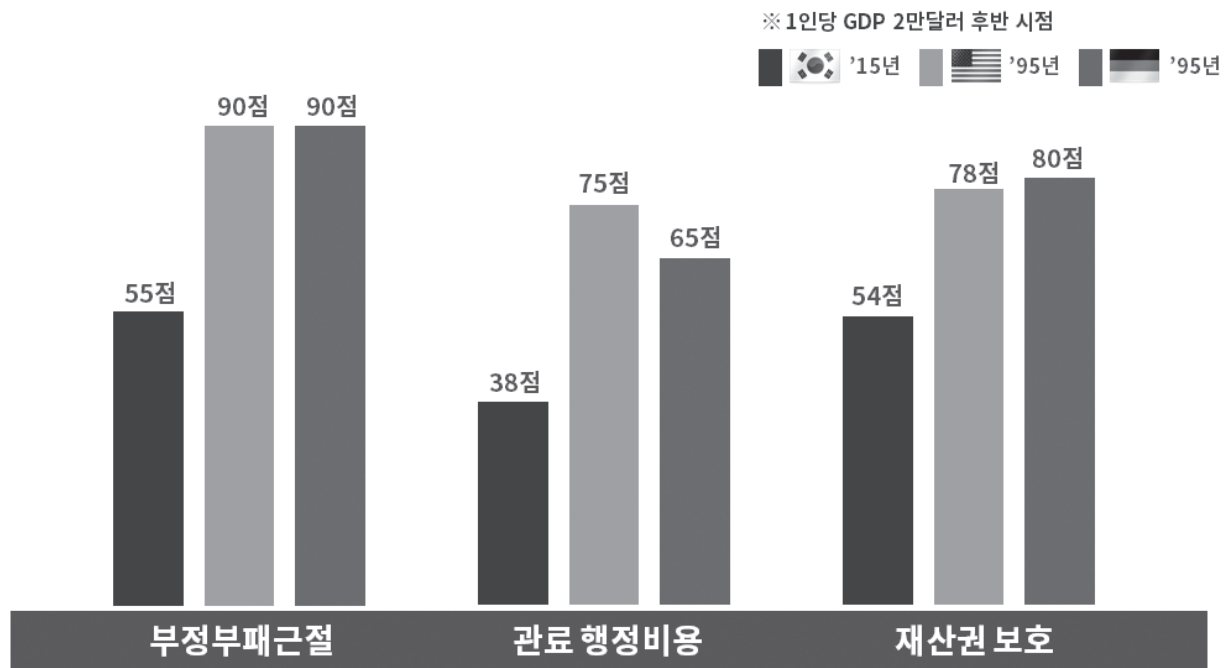
Structural Problems: 벌어지는 노동생산성 격차

GDP/연간 노동시간 (\$)



5

Structural Problems: 취약한 제도



자료 : 헤리티지 재단, 프레이저 재단

6

I 추진배경

II 추진경과

III 향후계획

한국경제의 성장모멘텀 되살리려면?



“낙후된 제도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지더라도 실행 어려움” - 김병연 서울대 교수

“우리 경제의 지속적 장기성장은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적 근본요소의 건전성 회복에 달려있다”

- 정 혁 서울대 교수

“늘 개혁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추진을 주도할 마땅한 그룹 없는 것이 현실... 상의는 전국 15만개 기업현장 의견 수렴할 수 있다는 특장점 지녔다”

-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8

대한상의, ‘미래준비’ 전담사무국 발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어젠다를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꾸준히 이끌어 나가겠다”

한국경제

商議 ‘미래 준비’ 전담 사무국 만든다

3대 중장기 경제 아젠다 설정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선진 기업환경 조성, 미래세대 준비 등 3대 중장기 경제 아젠다를 설정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인과 정책자문단 공동으로 이 같은 아젠다 추진을 위한 전담 사무국을 이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담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으로 2개월간 3개 아젠다별 실무회의를 하고, 12월에는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략회의는 반기별로 열 계획이다. 경제 아젠다 제안서를 마련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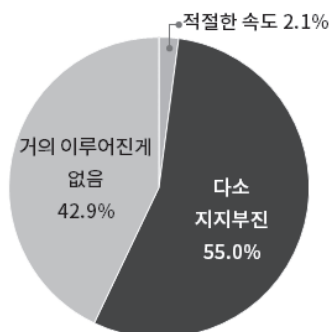
할 계획이다.

특히 회의가 ‘반짝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인 조사패널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경제 아젠다 추진자수를 내기로 했다.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 호감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대한상의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추진 속도에 대해 ‘다소 지지부진하다’(55.0%)거나 ‘거의 이뤄진 게 없다’(42.9%)는 부정적인 답이 많았다. 경제혁신을 위해 우선 논의돼야 할 사안(복수응답)으로는 규제개혁 우선순위 선정(81.5%), 서비스업 선진화(55.6%), 노동개혁(48.1%) 등이 꼽혔다.

서육진기자 venture@hankyung.com

국가 경제혁신 추진속도



※ 빠르게 추진 중 0%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의견조사(8/22)

9

‘3대 경제어젠다’ 기업+학계 공동선정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이 꼽은 주요 경제어젠다

- 규제개혁의 근본틀 개선(82%)
- 非시장적 입법현황 점검(7%)
- 일선공무원의 자세 개선(22%)
- 기업내 지배구조 개선(33%)
- 기업문화 선진화(33%)
- 청년고용 위한 노동개혁(48%)
- 서비스산업의 발전(56%)
- 현장친화적 교육대책 마련(26%)

경제계 3대 어젠다로 집약

① Upgrading Business Environment
: ‘선진기업환경 조성’

② Evolving Corporate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지위 향상’

③ Growing Next Generation
: ‘미래세대 준비’

10

AGENDA | Upgrading Business Environment

규제의 근본틀 개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 현행 규제프레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제조업 경영환경 국제비교 연구 등

非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포퓰리즘 입법남발·정체 지속 모니터링”

- 정당별 주요 경제정책·기업정책의 경제활동 친화도 분석
- 경제활성화와 장기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등

공무원 자세 개선

“공공기관, 공무원 자세 변화가 개혁의 시작”

- ‘기업 현장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 10選’ 소개
- 공무원의 관행 개선을 위한 personal incentive 촉진정책 연구 등

11

AGENDA II Evolving 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문화 선진화

“반기업정서는 잘못된 기업문화에서 발생하기도”

-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문화와 경영프랙티스 개선방안
- 소통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직무조직 개편방안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노력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

-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
- 지배구조 투명화로 인한 장기적 효용 분석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책임”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지역별 특징과 시사점
-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 변화 연구 등

12

AGENDA III Growing Next Generation

산업구조 역동성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 국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시사점 등

청년고용위한 구조개혁

“현실성 있는 개혁방향 정립 필요”

- 경제구조 혁신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 분석
- 선진 노사문화 논의 확산 및 국내 모범사례 발굴 등

현장친화적 교육대책 마련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청년실업문제를 가속화”

- 우리경제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와 향후과제 조사등

통일대비/ 기후·환경 등

“통일, 기후환경대비 등은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 우리기업의 남북경협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등

13

오늘 발표주제는?

1

규제의 근본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발표 : 김태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한양대 교수
- 공동연구: 김주찬(광운대), 장석인(KIET), 이수일(KDI), 이혁우(배재대) 등



2

구시대적 기업문화의 실제사례와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 발표 : 최원식 맥킨지코리아 대표
- 자문: 신현한(연세대), 정혁(서울대), 백기복(국민대), Todd Sample(前한전) 등



3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발표 : 김현수 서비스사이언스학회장·국민대 교수
- 공동연구: 신관호(연세대), 차문중(SERI), 김주훈(KDI), 박문수(산업연구원) 등



14

I

추진배경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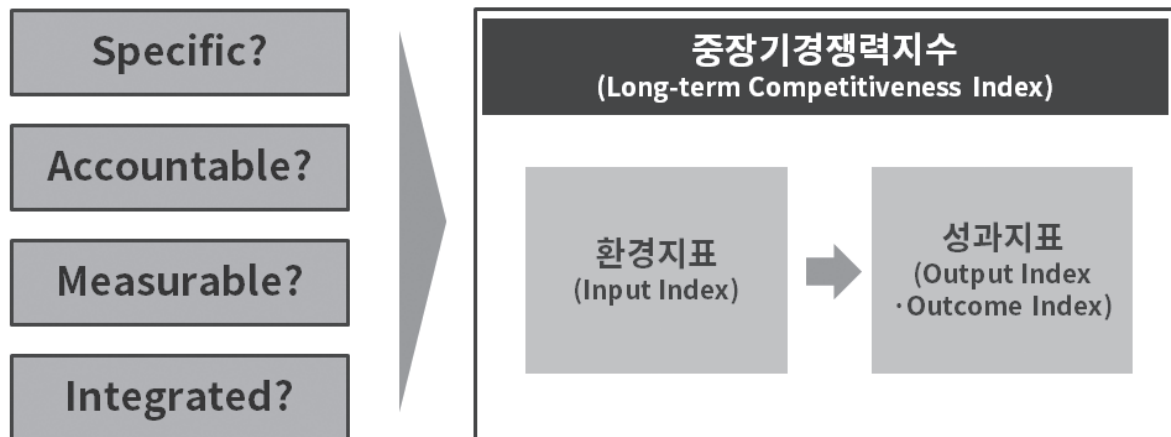
추진경과

III

향후계획

추동력 확보방안은?

“지속적으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
진척수준을 담은 지표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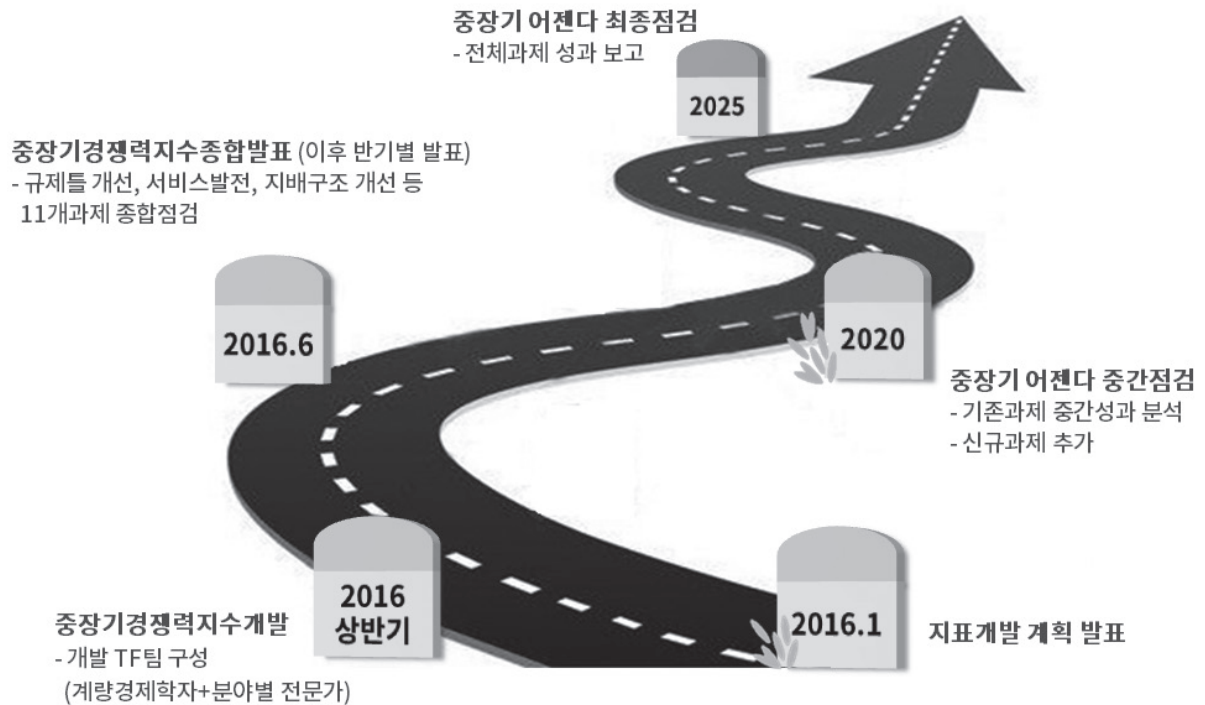
16

예시 규제외 근본틀 개선지표

환경지표	성과지표
→ 규제전문가 평가 • 규제분야별 개선도 - 각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평가 • 규제틀 개선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등	→ 피규제기업 평가 • 규제분야별 개선체감도 - 각 분야별 개선성과 평가 • 규제틀 개선종합체감도 - 분야별 가중치 두어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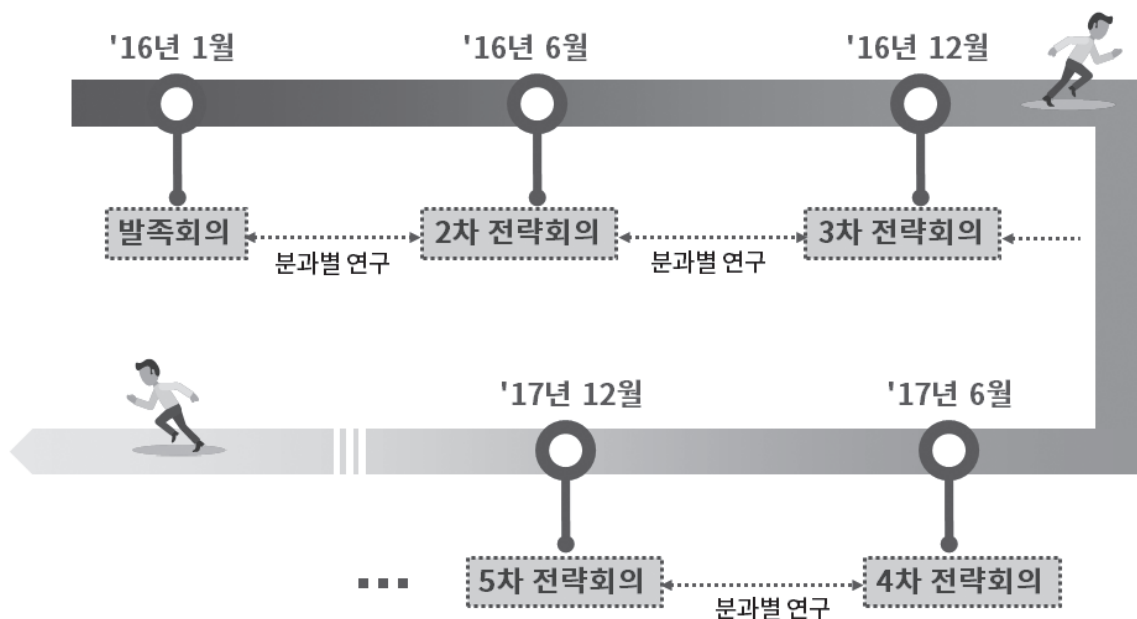
17

지표개발 및 발표 계획



18

“6개월마다 중장기 어젠다를 점검하겠습니다”



19

각 분과 연구결과 발표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프레임 개선방안

김 태 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
한양대 교수

선진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프레임 개선방안

2016. 1.

김 태 윤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Contents

- I 현행규제프레임의 문제점
- II 주요국 사례
- III 규제프레임 전환의 기본방향
- IV 규제프레임 전환의 Action Plan



현행규제프레임의 문제점



주요국 성공사례



규제프레임 전환의 기본방향



규제프레임 전환의 Action Plan

규제프레임의 문제점

▶ 민간의 창의·혁신이 지속성장의 핵심인 시대

과거

- 정부건인 경제성장
- 경계內 제조역량 중요
- 기업 책임의식 미비



현재

- 민간 혁신이 경제발전 주도
- 경계파괴, 창의·혁신역량 중요
- 기업 자율적 책임이행 확산

▶ 기존 ‘규제프레임’이 기업의 경계밖 진출 저해

규제프레임의
신규사업
저해내용

- 민간이 신사업 벌이는 것을 일일이 사전 통제
- 정해진 칸막이내에서만 일 벌일 수 있도록 제한
- 필요 이상의 제약과 의무부과로 경제활동 제약
- 법령이 복잡하고 불분명해 신사업 위축
- 신기술·신제품 출시기준 등 없어 사업화 제약

기존 규제프레임의 경제적 손실

1 서비스산업분야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해

- “벤처기업의 은행업 진출 제한(은산분리)” →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제약
- “디지털 인체영상(아바타)의 정보소유권, 신체정보 보호범위 등 불분명”
→ 가상의류 착용서비스 활성화 차질

2 신산업분야 신제품 개발·출시 제약

- “3D프린터 활용 인체장기 복제 등을 위한 인증기준 부재”
→ 국산제품 불신 및 구매기피(외산 선호)
- “위치정보 등 수집시 사전동의 요구(개인정보로 간주), 스마트기기 인증기준 부재”
→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저해

4

기존 규제프레임의 잠재적 손실

1 새만금 네거티브화의 경제적 효과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업종제한, 외국인학교 설립 등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면..
→ 투자유발·고용증진·매출확대 등 경제적 효과 2조1천억

2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 전체 진입규제를 10% 풀면.. → 신규기업 1.2%, 일자리 0.4% 증가
- 서비스분야 진입규제 10% 풀면.. → 해당분야 일자리 0.6% 증가

5

I 현행규제프레임의 문제점

II 주요국 성공사례

III 규제프레임 전환의 기본방향

IV 규제프레임 전환의 Action Plan

영국의 통신시장 사전규제 철폐 ('05년)

추진목적 이용자 보호(소비자불만 해소), 경쟁을 통한 시장성장, 이용자 능력배양

주요내용

- i 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규제 철폐
- ii 요금규제 철폐(한시적으로 가격상한제 운영)
- iii 경매 등 시장경쟁 원칙에 입각한 주파수 배분
- iv 네트워크 공공성(동등접속 보장),
공정경쟁 등 필수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주요성과

- 이용자 편익(만족도) 및 활용능력 향상
- 'Consumer Experience Report'의 10년간 주기적 평가결과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독일의 네거티브규제 원칙

▶ 독일은 헌법부터 네거티브 방식

- 시장경쟁에 의한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직업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

독일기본법 (Grundgesetz) 제12조 제1항

“모든 독일국민은 자유롭게 직업과 교육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다”

▶ 개별법도 네거티브 방식

영업법(Gewerbeordnung) 제1조 직업의 자유 (1869년 제정)

- ① 이 법의 제한사항이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의 영업이 허용된다
- ② 과거에 영업을 정당하게 수행했던 자는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영업 수행이 금지되지 않는다

8

프랑스의 ‘간소화 쇼크 프로그램’ (’13년)

추진목적 '13년 행정규제 50만건 → 행정현대화, 법률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기본원칙

- i 침묵은 동의 : 행정기관이 이의제기 않으면 간소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ii 일대일 상쇄 : 신설규제 1건은 규제폐지 1건과 상쇄 (6개월마다 점검)
- iii 선천적 신뢰 : 기업은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단 감사 등 관리감독 상황은 예외)
- iv 한번만 제출 : 한번의 정보제공으로 행정절차를 마치도록 정보시스템 구비

주요내용

- ‘행정현대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위원회’를 구성해 프로그램 기초 마련
- ’13년 이후 200개 이상의 정책 발표, 통합 웹포털 운영해 정보제공

개선사례

- 변경전** 개발 프로젝트에 환경안전 인증 받으려면 다수의 규제와 절차 적용
- 변경후** ‘환경인증 통합’ 및 ‘프로젝트 단위 일괄인증제’로 원샷 처리

9

I

현행규제프레임의 문제점

II

주요국 성공사례

III

규제프레임 전환의 기본방향

IV

규제프레임 전환의 Action Plan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문제점

- 과학기술 발전, 시장변화로 과거에 만든 사전규제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짐
- 자율규제 가능한 부분까지 통제해 시장경쟁 왜곡
- 성장한계 직면한 우리 경제의 신사업, 신산업 활로 마련에 장애물
- 기업가정신 등 건전한 위험감수 차단 → 反창의적 분위기 고착

개선 방향

- 기업활동 개시 전에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점검, 통제하는 사전규제를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 또는 감시감독을 통해 위법행위만 제재하는 사후규제로 전환

※ 미국의 쓰레기 재활용 허용

(과거) 샌프란시스코주, 쓰레기 재활용 원천금지 (전량 매립 처리)

(개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포도밭 퇴비활용. 4만여 가정에 전력공급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한국경제

2015년 02월 09일 월요일 A10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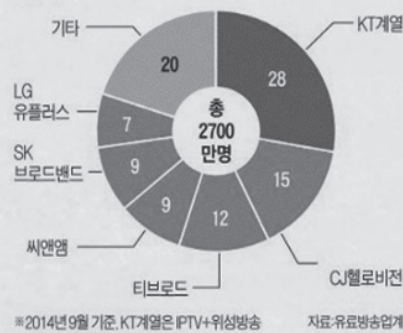
“유료방송 점유율 33% 넘으면 영업 금지” ... 과잉규제 논란

사전에 점유율 규제하는 나라 없어

국회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12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문제점

- 허용행위 나열하고 그외 금지 → 신사업과 융합의 창의·혁신활동 위축
- 민간의 도발적이며 도전적인 혁신활동을 원칙적으로 봉쇄

개선 방향

- 허용되는 경제활동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사항 외 모든 경제활동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네거티브화 방안

- 새만금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
- 용도별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절차 개선
- 他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 수수료 등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 위 사항을 포함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개정 검토

13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뉴스토마토

2015년 01월 14일

(Fintech 시대의 과제)③빛 못보는 신기술 수두룩..네거티브식 규제 필요
외환거래법·여신금융법도 발목.."관료 보신주의도 한 몫"

국내 선도업체들의 핀테크 기술은 당장 상용화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문·홍채인식과 같은 생체정보와 스마트폰 서명 등을 통한 본인인증 기술이 주를 이루지만
이마저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물론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규제 폐지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기술을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장벽을 파괴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비대면인증 부문, 비밀번호 입력방식 대부분

현재 핀테크 비대면인증에는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밀번호 유출 위험 등으로 인해 보안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14

획일·과잉규제의 유연화

문제점

- 규제준수 능력 등을 도외시하고 일률적 규제 → 사업포기, 제도권 이탈 조장
- 규제범위와 강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

개선 방향

- 규제차별화, 특례, 규제유예 등 규제적용의 유연화
- 과잉규제를 완화 및 간소화해 기업의 규제대응 지원

※ 영국의 소기업 모라토리엄

: 창업기업 및 10인 이하 소기업에는 신설되는 국내규제 3년간 면제(적용유예)

- 대기업보다 자원·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 신설규제 도입시 시행하는 규제영향평가에서 중소기업 영향 분석 의무화
- ➡ 필수규제, 소기업 부담없는 규제는 규제절감위원회 승인받아 적용

15

한국경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A05면 종합

‘금산분리’ 규제도 모자라 非금융사까지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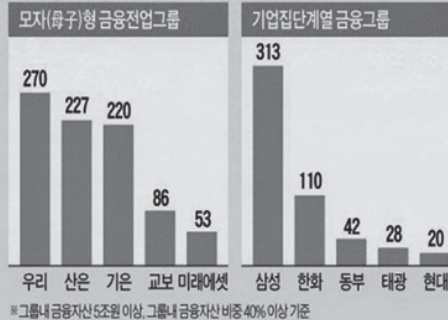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산업자본)

10년만에 다시 꺼낸 복합금융그룹 지정제

금융위원회가 2006년 추진하려다 폐기한 복합금융그룹 지정제를 다시 꺼냈다. 삼성, 한화처럼 산업자본이면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여럿 보유한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룹 위기가 금융사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취지지만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독대상 복합금융그룹 예시 (단위: 조원)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세부 감독내용

- 1 자본적정성 평가**
금융그룹 연결자기자본 > 금융그룹의 필요자본
- 2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감독당국 ↔ 금융그룹 대표회사 ↔ 금융그룹 소속회사
- 3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
대표회사가 금융·비금융 계열사와 협의해 기준 마련

16

복잡·모호한 회색규제(Gray Zone) 개선

문제점

- 부처별 칸막이 규제받느라 과다한 행정비용 소요
- 규제조항이 불명확해 집행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 상존
- 기업은 어떤 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몰라 규제준수에 애로

개선 방향

- 통합적인 규제민원 창구 개설
- 규제조항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재정비
- 불분명한 규제의 유권해석을 위한 창구 마련

※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 규제적합 여부 불분명시 확인 요청 → 담당부처가 적법성 신속 확인

<사례①> 낫산자동차, 운전자 의식불명시 ‘갓길 자동정지시스템’ 적법여부 문의
→ 주행장치 아닌 제동장치로 적합 승인. 자동주행기능의 상용화 기대

<사례②> 휘트니스클럽의 운동지도는 의료행위 아닌것으로 판단

17

복잡·모호한 회색규제(Gray Zone) 개선



18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마련

문제점

- 시장에 없는 신제품, 융복합제품 개발해도 인증기준 없어 출시 지연
- 경쟁국 기업보다 먼저 개발해 놓고 제때 출시 못하는 상황 반복

개선 방향

- 기술수준과 규제체제 지속 모니터링 → 선제적 규제인프라 구비

※ 미국 FDA의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nnovation Pathway)

- 기업이 기존규제로 해결하기 힘든 신제품(주로 의료기기)을 개발할 때 FDA가 기술개발 단계부터 해당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
- 제품개발 및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정보 및 행정지원, 기술자문까지 시행
- '05년 도입 이래 '14년 10월까지 169개 신제품이 지원신청
→ 80여건 선정해 지원중. 15건은 인증기준 개발해 인허가까지 완료

19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007면 정치

자전거도로 못가는 전기자전거... 위험 안고 달리는 세그웨이

똑똑해진 이동수단... 法은 이제 스타트

런치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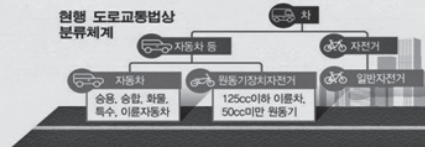
외발·양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얼마전 중국 사오미가 1999위안(약 35만원)짜리 전동휠 '나인봇 미니'를 발표하는 등 국내시장 저변도 폭발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고지대'에 놓여있는 우려가 나온다. 각국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앞다퉈 개발에 나선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경우 아직 법체계상 정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인봇·세그웨이 어디서 타나

21일 국회에 따르면 나인봇,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과 같이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만16세 이상 취득 가능)만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분류체계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시속 20~25km로 차도 운행

"전기자전거, 자전거로 분류를"
국회 발의 개정안 5건은 '낮잠'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에 따른 내용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도 세그웨이 운영을 직

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2013년과 2014년 1차례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 위에서는 논의됐으나 안전성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차례 결론 없이 보류됐다.

산업계에서도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분류는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8% 이상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400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시장은 연간 1만 여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특히 주요 부품인 전기·배터리기술이 기존 자전거 제작기술과 융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20

I

현행규제프레임의 문제점

II

주요국 성공사례

III

규제프레임 전환의 기본방향

IV

규제프레임 전환의 Action Plan

유형별 개선과제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획일·과잉
규제의 유연화

복잡·모호한
회색규제
(Gray Zone) 개선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마련

i 특별한 근거없는 검업금지 폐지

- 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 검업금지(IoT용 센서 제조불가)
- 약사 검업금지(약국·한의원, 약국·카페, 약국·빵집 등 불가)

ii 경쟁제한적 포괄적 예방규제 폐지

- 일부지역 산업단지 개발주체를 지자체로 한정(다양한 주체 참여불가)

iii 투입규제에서 성과규제로 전환

-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사의 매출 및 채널점유율 제한

iv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진입규제 타파

- 건축사가 설립한 건축법인만 건축설계 가능

22

유형별 개선과제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획일·과잉
규제의 유연화

복잡·모호한
회색규제
(Gray Zone) 개선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마련

i 특정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규제(관광산업규제, 산업단지 개발자격제한 등)

ii 특정한 승인불가 경우 외 인허가 모두 승인

- 진료기록 열람방식 나열(온라인 열람불허, 원격진료 발전 저해)
- 기능성 화장품 종류 나열(주름개선, 미백개선, 차외선차단 등 3종)

iii 업무영역 및 상품 등의 포괄적 정의

- 메디컬푸드(특수의료용식품)를 당뇨환자용식품 등 8종만 인정(치매환자용 식품 등 의료+식품 융합 저해)
- 신재생에너지로 풍력 등 8종만 인정(공기·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생성 히트펌프 불인정)

23

유형별 개선과제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획일·과잉
규제의 유연화**

복잡·모호한
회색규제
(Gray Zone) 개선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마련

i 피규제자의 준수능력에 따른 규제 차등화

-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자산5조) 8년째 불변(중견기업도 편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난해
(중소기업 50%,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

ii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의무이행 규제의 준수방식 다원화

- 보험상품 및 보험료 규제(다양한 상품개발 저해)

iii 역차별적 규제의 폐지

- 스마트폰 제조사 앱 선택재 금지(국내기업만 적용, 구글 등 제외)

24

유형별 개선과제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획일·과잉
규제의 유연화

**복잡·모호한
회색규제
(Gray Zone) 개선**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마련

i 다부처 연관 규제의 민원창구 일원화

- 공장신증설(산업부·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 통관취급 물류기업 직접운송의무(화물자동차법+관세사법)

ii 자의적 해석 가능한 규정의 명확화

- 개발사업 인허가요건인 ‘주민동의’(전원동의로 해석해 불허)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제

iii 규제체제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

-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령 충돌(유통산업발전법 vs 지자체규제)

25

유형별 개선과제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i 제도 불비시 신산업 원칙적 자유화 - 전기자전거에 원동기 규제 적용(차도로만 주행가능, 원동기면허 요구) - 60W이상 고효율 LED램프 인증규격 부재(판매 불가)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규제화	ii 기술발전에 후행하는 법령의 정비 - 도로교통법은 운전자탑승을 전제(자율주행자동차 도로주행 불가) - 엘리베이터는 사람만 조작 가능(인공지능 무인엘리베이터 제한) - 스마트기기 통한 인체정보 수집기준 부재(빅데이터 활용 곤란)
획일·과잉 규제의 유연화	iii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인프라 선제적 마련 - 스마트폰 등 IT와 의료기기 융복합제품 등 - 무인차, 드론, 로봇 등 인공지능분야 등
복잡·모호한 회색규제 (Gray Zone) 개선	
신산업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마련	

26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 ▶ 규제프레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대부분 포함
- ▶ '14년 8월 발의 이후 2년간 국회 계류중
 - 규제개혁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유로 입법지연
 - 핵심내용이라도 우선 처리 필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원칙	규제프레임 전환 방향
① 네거티브 규제원칙 ② 행정규제 탄력적용제 ③ 중소기업 규제차등제 ④ 규제비용총량제 ⑤ 적극행정 면책	①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② 포지티브규제의네거티브화 ③ 획일·과잉규제의유연화 ④ 회색규제(Gray Zone) 개선 ⑤ 신사업 규제인프라 구축

27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① 네거티브 규제원칙

제6조의2(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8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② 행정규제 탄력적용제

제22조의5(규제의 탄력적 적용)

- ① 기술 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적용 유무 등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이하“규제의 탄력적 적용”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질의나 요청(이하“질의등”이라 한다)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등을 한 자에게 질의등의 취지·목적,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등을 한 자에게 그 질의등에 대한 답변 또는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 주고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의등이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답변 및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법령등의 정비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

29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③ 중소기업 규제차등제

제22조의6 (규제의 차등 적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규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2조·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④ 규제비용총량제

제22조의2 (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의 규제순비용 총량(이하 “규제비용총량”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5.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6. 그 밖에 행정질서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순비용의 범위·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 절차 등 규제비용총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4 규제비용총량제

제22조의3(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 제출과 공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을 종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 제출·공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행정규제기본법 개선

5 적극행정면책

현행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33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정책의 원칙

구분	규제개혁 정책 및 행정	모니터링 핵심요소
사후규제화	- 기존의 사전규제 사후 및 자율화 - 신설규제의 사후 및 자율화	+ 사후·자율규제화 건수/총 사전규제 건수
네거티브화	- 기존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화 - 신설규제의 네거티브화	+ 네거티브규제화 건수/총 포지티브규제 건수
유연화	- 기존 획일과잉규제의 유연화 - 신설규제의 유연화	+ 규제유연화 건수/총 획일과잉규제 건수
명확화	- 기존 복잡모호한 규제의 명확화 - 신설규제의 명확화	- 복잡모호규제 신고 건수/총 복잡모호규제 건수
선제적 마련	- 기존 규제공백의 정비 - 신산업 창발 원칙적 자유화	+ 선제적 제도마련 건수/총 규제공백 건수

34

여기서 잠깐 !!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 이익에 영합	ex)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법 열쇠관리사를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등록제 도입 ➡ 이익단체 신설로 규제의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
실효성 없는 전시성 규제	ex)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내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제한 ➡ 규제로 의도한 효과 달성어려움
국민통합저해	ex) 대규모유통업의 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자를 시장지배사업자로 규정해 계약방식 등 규제 ➡ 각종 행위를 불필요하게 규제해 시장질서 훼손
과도한 벌칙 강화	ex) 식품위생법 개정안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매출액의 10배 상당 과징금 부과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 모니터링 결과 (대상 : 19대국회 발의법률 중 중요규제사무 2,026건)

35

여기서 잠깐 !!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도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국회 법률안 발의 현황

	정부 발의	의원 발의
17대	1,102	6,387
18대	1,693	12,220
19대	1,081	16,110
합계	3,876	34,717

▶ 규제관련 법안 발의 현황 ('14. 7. 1~)

	정부 발의	의원 발의
전 체	857	6,661
규제 관련	69 (8%)	1,287 (19%)

36

여기서 잠깐 !!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정책제언

1.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꼭 도입되어야 한다

(국회법 79조3항 정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실현 기대)

ex) 국회법 제79조의3 (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 등의 제출)

-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행정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RIA)에 비해 강제성과 구속력이 떨어져도 크게 상관없다
(왜냐하면) 평가결과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왜냐하면) 규제영향평가가 불성실하다고 발의의원이 정치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 공공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자극하는 방식의 과정과 절차 도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제영향평가는 분석보다는 이해관계자 확인·의견 청취 등 공청회 성격이 크므로

2. 정부의 규제총량관리제도도 우회입법 줄이는 간접적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37

중장기 로드맵

주요활동	주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규제프레임 개선방향 및 실행과제 건의	상의	▶									
프레임전환 입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국회	▶	▶	▶	▶	▶	▶	▶	▶	▶	▶
분야별 건의과제 개선 - 규제대안 개발 역량 강화 연구 및 교육	정부	▶	▶	▶	▶	▶	▶	▶	▶	▶	▶
이행점검 및 보완과제 제시	상의										
- 규제프레임 개선도 측정 (매년)			▲	▲	▲	▲	▲	▲	▲	▲	▲
- 규제개선 과제 추가 발굴·건의 (격년)				▲		▲		▲		▲	▲
- 정책 컨퍼런스 (종합평가)				▲			▲				▲

38

성과점검 지표

점검 지표

- 규제틀 개선도: 규제프레임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이행수준 (전문가평가)
 - 규제틀 개선체감도: 분야별 규제 개선성과 평가 (피규제기업 대상 설문)
- ※ 지표별로 100점 만점 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S-A-B-C-D)

Milestone(예)



3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문화 선진화 방안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한국 기업문화 선진화 방안

- 한국 기업문화 및 조직건강도 진단사업 -

2016. 1.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McKinsey&Company

-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 맥킨지 아시아 전략 프랙티스 및 맥킨지 아시아 센터 리더
- 맥킨지 제2차 한국보고서: 신 성장공식 공동저자 (2013년 4월 발간)
- (前) 국민경제 자문회의 (대통령 자문기구) 창조경제 분과장
- (現) 미래부 창조경제평가위원회 위원장

약력

- 지난 15년간 한국 및 아시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 성과 혁신, 해외 M&A/PMI 지원
- B2B 이커머스 벤처기업 창업/경영
- 미국 Honeywell사 엔지니어 근무
-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Wharton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MBA
- Princeton University 기계/항공우주 학사

McKinsey & Company

목 차



I 진단 배경

II 진단 개요

III 추진 현황

IV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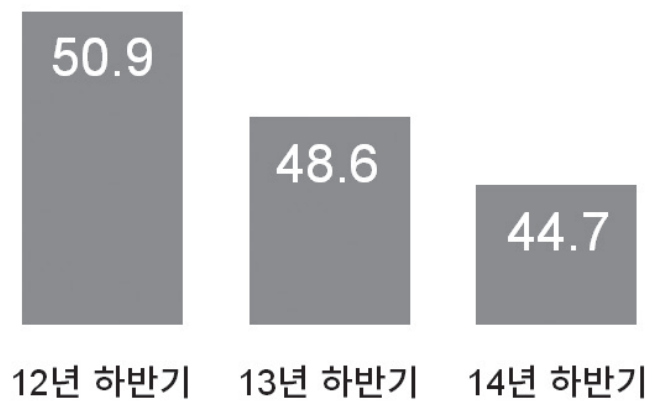
뉴 노멀 환경 속 반기업정서 악화



1영화 '베테랑'에서 출처함

2TVN 드라마 '미생'에서 출처함

대한상의 기업 호감지수 (CFI/점)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요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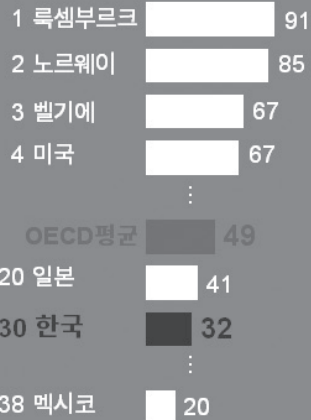
전근대적, 비과학적
업무관행과
기업문화

- 근면성실만 강조하는 장시간 근로관행
- 연공중심/상명하복의 수직적 소통문화
- 여성에 불리한 근로문화 (예, 술자리위주 회식)
- 형식주의/보여주기 위주의 과도한 보고
- ...

국가별 연평균 근로시간¹
(시간)



국가별 시간당 노동
생산성¹
(달러/시간)



사회
눈높이에
맞는
선진관행과
문화 정착
필요

출처: OECD Webpage (2014)

4

피상적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

'정시퇴근,
강제 소등해도
김대리가 야근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성근로문화 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소극적이고,
특정 업무
기피

기회도
안주면서
업무능력에
대해 편견



1 피상이 아닌 근인에 대한
이해, 가슴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 및
근원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

2 이러한 상황은 한번에
바꿀 수 없으며, 인식과
시스템 모두 바뀌고
사회 전체에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

5

목 차



I 진단 배경

II 진단 개요

III 추진 현황

IV 향후 계획

한국기업문화 및 조직건강도 진단 개요

방법론 및 기대 산출물

- 1 국내 100개 기업 대상, 진단 및 분석
- 2 맥킨지 조직건강도(OHI) 및 한국기업문화 통합 설문 실시
- 3 한국기업문화 이슈의 근인 규명 및 글로벌 대비 조직건강 수준 제시
- 4 한국기업문화 및 조직건강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본질적/복합적 근인 파악

“습관적 야근”

조직관리
제도·프로세스·시스템

기업조직 거버넌스

사회/문화적
특수성

다양한 진단방법을 통한 접근



8

정량조사의 주요 영역

한국기업문화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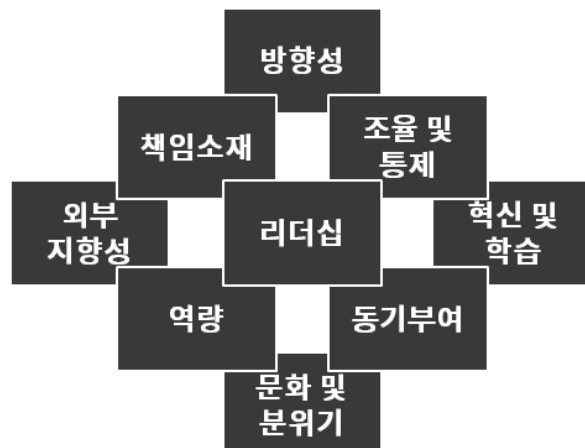
8개 영역, 19개 문항

일하는 방식	야근
	회의
	회식
	보고
	업무지시
사회적 인식	여성근로
	규범준수
	상생협력

+

글로벌 조직건강도 설문

9개 영역, 98개 문항



총 17개 영역, 117개 문항에 대한 설문 실시

9

목 차



- I 진단 배경
- II 진단 개요
- III 추진 현황
- IV 향후 계획

진단 추진현황

“Corporate Korea”

한국 내 100개 기업,
총 40,000명 참여



남녀별



세대별



직급별



직무별

초기 결과공유 1: 글로벌 대비 조직건강도 수준

국내기업 조직건강도 평균¹
(100개 기업, n=39,983)

글로벌
하위 25% 그룹²
수준



¹ 국내기업 100개 합산 조직건강도의 중간값

² 맥킨지내 조직건강도 글로벌 전체기업 Database 전체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위에서부터 25%씩 나누어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나누었을 때 하위 25% 그룹에 속함을 의미

12

초기 결과공유 2: 습관적 야근



평소 야근이 많아 퇴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70%
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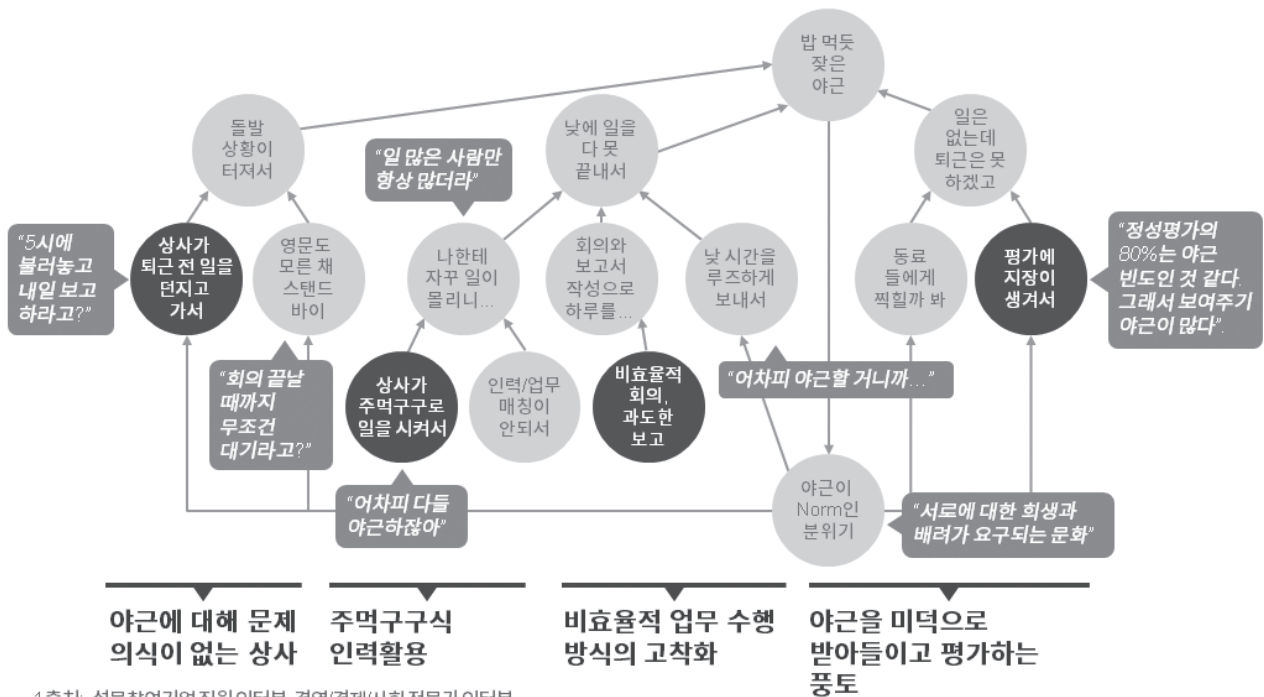
주 5일중
평균 2.3일 야근

3일 이상 야근하는
직장인, 전체의
43%

¹ 출처: Aggregated scores - Korea OHI (n=39,983 no. of surveys=99)

13

[근인분석] 습관적 야근이 발생하는 이유



14

목 차

I 진단 배경

II 진단 개요

III 추진 현황

IV 향후 계획

어떻게 Action을 일으킬 것인가?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공감확산과 자발적 참여 유도



16

Step 1: Mass 대상 사회적 반향조성



- 1 사회적 Norm으로 자리잡은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환기 (e.g., ‘건강한 구성원, 건강한 기업’ 캠페인)
- 2 잘못된 기업문화에 스스로가 기여하고 있음을 인지
- 3 CEO 및 기업에 대한 Pressure 형성

17

Step 2: CEO 대상 설득과 수용



- 1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최고경영자/CEO의 개선의지 유도
- 2 New Normal, 이제는 기업에게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필요함을 인지
- 3 Awareness → Conviction → Take Actions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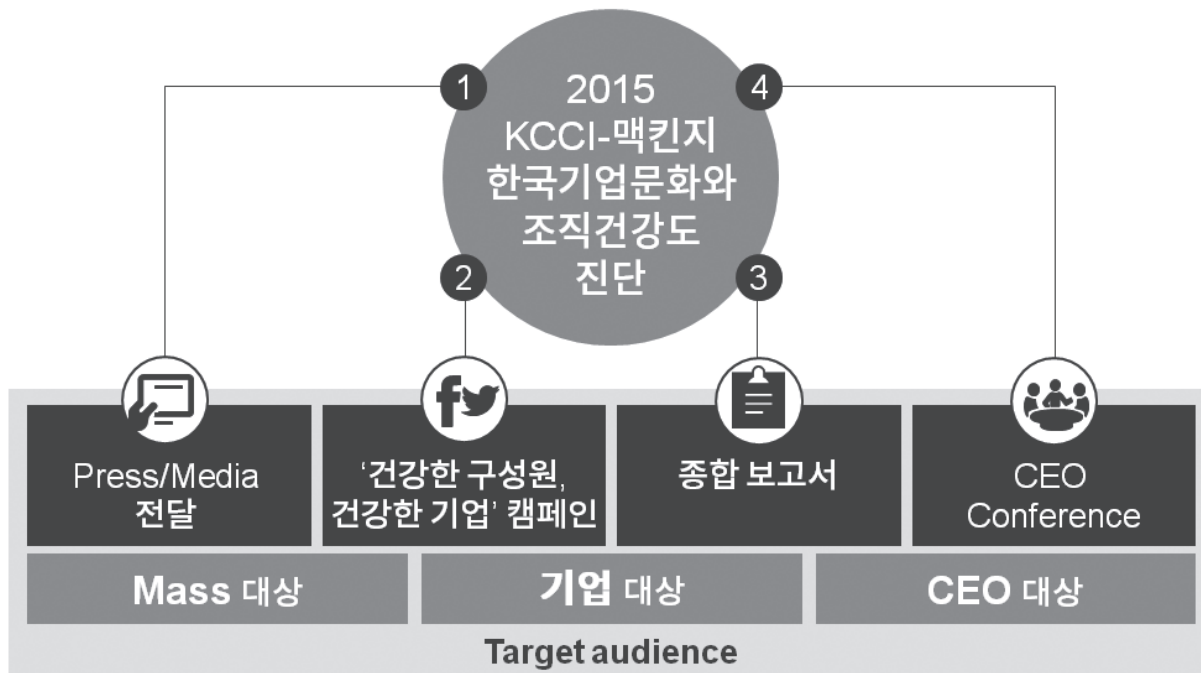
Step 3: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실행을 위한 해법제시



- 1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 실행 유도
- 2 새로운 리더상의 실천과 변화의 주체인 '낀 세대 리더' 집중 육성
- 3 기업문화에 대한 자발적/지속적 개선의지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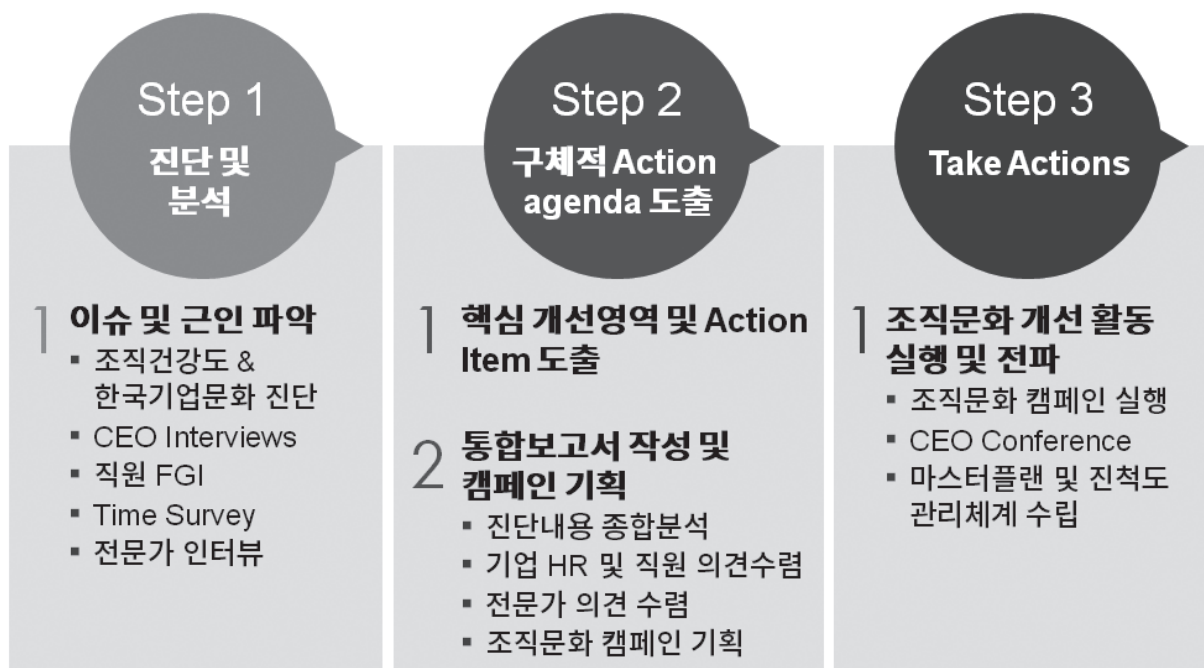
19

기업문화 선진화 실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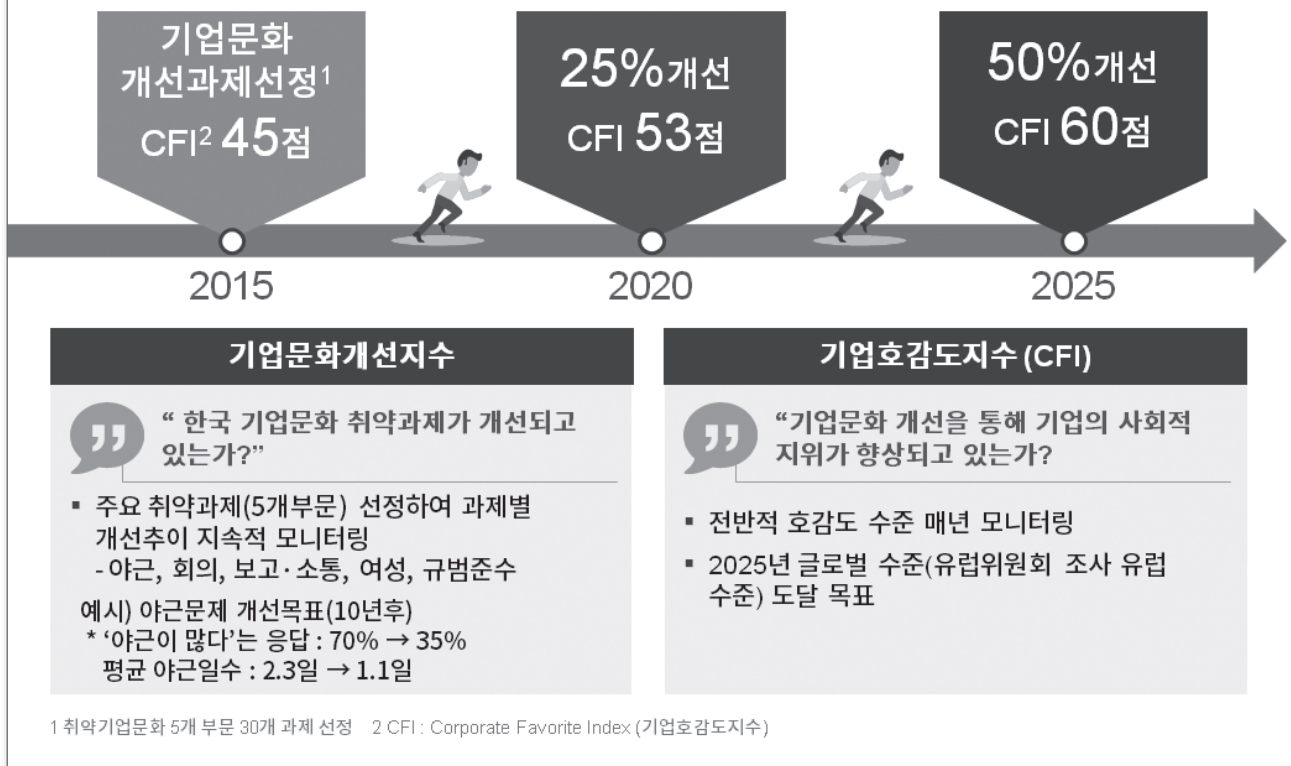
20

향후 추진계획



21

한국기업문화 및 조직건강도 점검 지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김 현 수

서비스사이언스학회장
국민대 교수

국민행복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2016. 1.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Contents

- I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II 기존 정책과 서비스산업 실태
- III 발전 장애요인과 패러다임 전환
- IV 추진과제
- V 후속계획 (MILESTONE)

I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II 기존 정책과 서비스산업 실태
- III 발전 장애요인과 패러다임 전환
- IV 추진과제
- V 후속계획 (MILESTONE)

2016대한민국, 그리고 해법

현재 한국은 총체적 위기 국면

(혁신능력은 저하, 퇴보위험은 고조)

- 사회문제: 고학력 실업, 복지비용 급증, 양극화 심화
- 경제문제: 재정건전성 위협,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 미래불안: 압축성장의 역습, 구조변화 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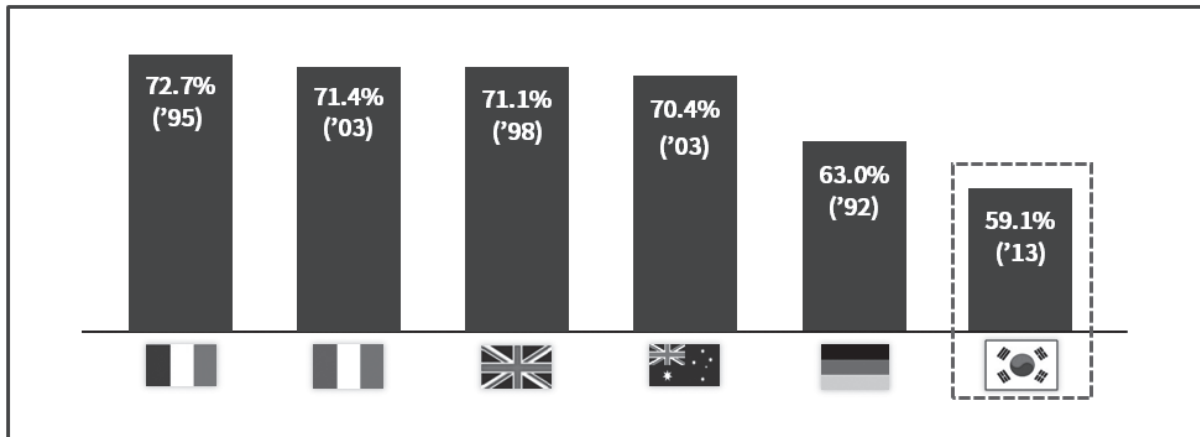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법은
서비스산업 발전

<대한민국의 현실>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 (1/2)

- ▶ 국민소득 2만 5천불 진입시점에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을 비교하면 선진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70%를 상회
- ▶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60% 수준에도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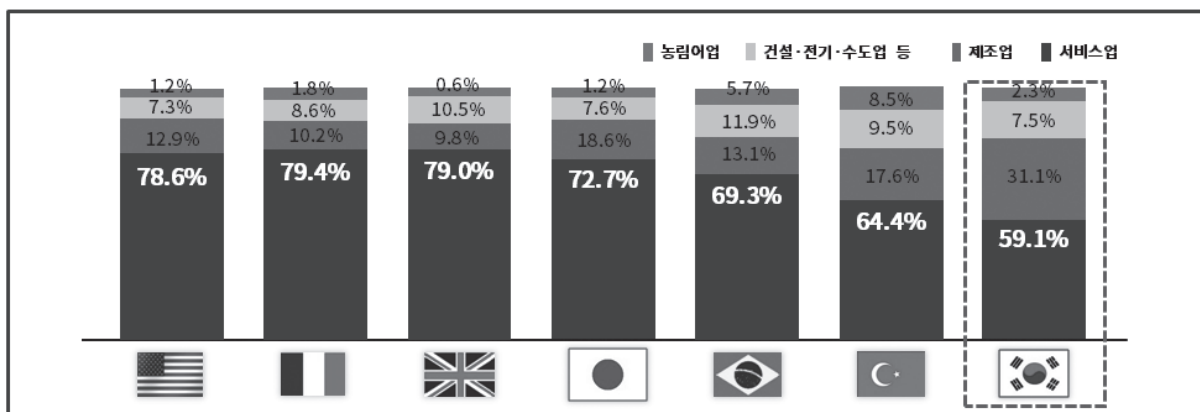


·자료출처: 세계은행

4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 (2/2)

- ▶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80%에 육박
- ▶ 최근 중국도 수출 → 내수, 제조업 → 서비스업 비중 확대로 경제운용을 전환 중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2013), 미국과 일본은 2011년 기준

5

SERVICE KOREA INITIATIVE

서비스산업 발전은 단순히 산업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닌
실질경제성장에도 많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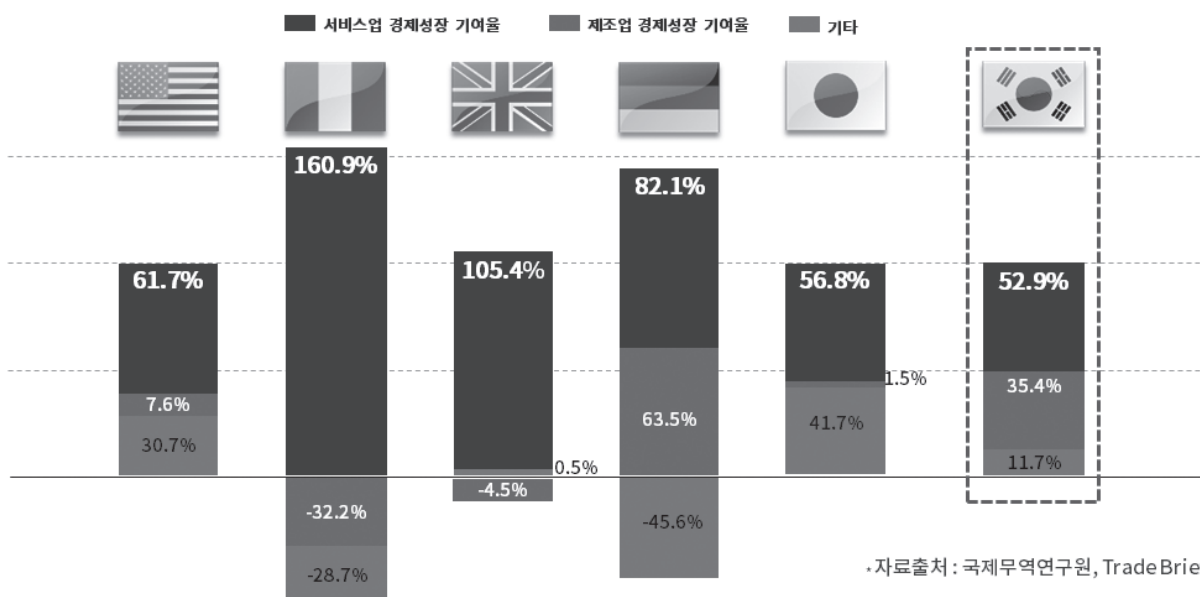
또한, 청년 10명 중 8명이
서비스분야 일자리 원해 (KDI, 2015.10)

6

주요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경제성장 기여율

▶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13년): 美 61.7%, 佛 160.9%, 韓 52.9%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 산업의 실질부가가치유발액 증감분/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분



7

I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II 기존 정책과 서비스산업 실태

III 발전 장애요인과 패러다임 전환

IV 추진과제

V 후속계획 (MILESTONE)

기존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재경부가 2001년 ‘내수진작 종합대책’ 발표하며 시작

- 세제지원, 자금공급 포함 종합적 육성정책 및 분야별 발전대책을 20차례 넘게 추진
- 최근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중심 육성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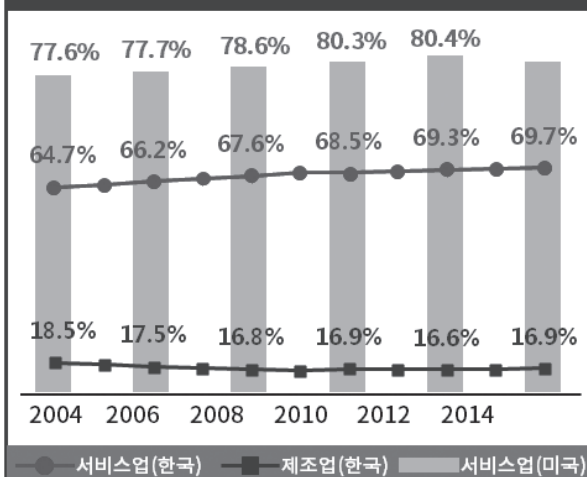
지난 15년간 정책에 대한 평가

-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정 성과 시현
 - 비자제도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외국인관광객 1,400만 명 시대 도래
 -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등
- 그렇지만 이해갈등으로 규제개선 작업이 지연되거나 차질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의 국회계류 기간: 3년 6개월('12.7월 발의)

그러다 보니, 서비스산업 전반적으로는 발전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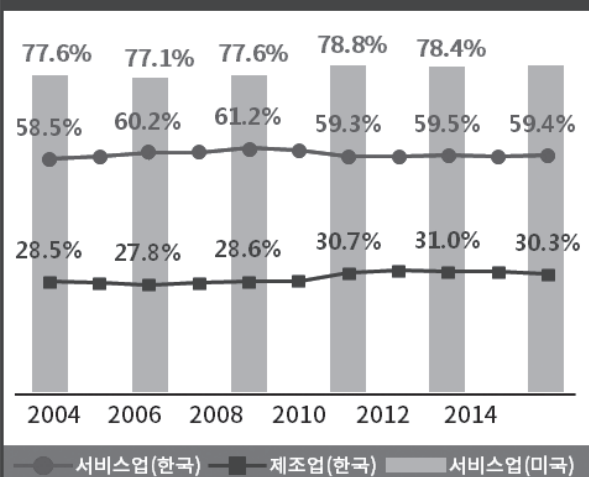
- ▶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은 서비스업 고용과 부가가치가 상승세
- ▶ 우리는 발전 속도가 더디고 부가가치 창출력이 정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 추이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조사 각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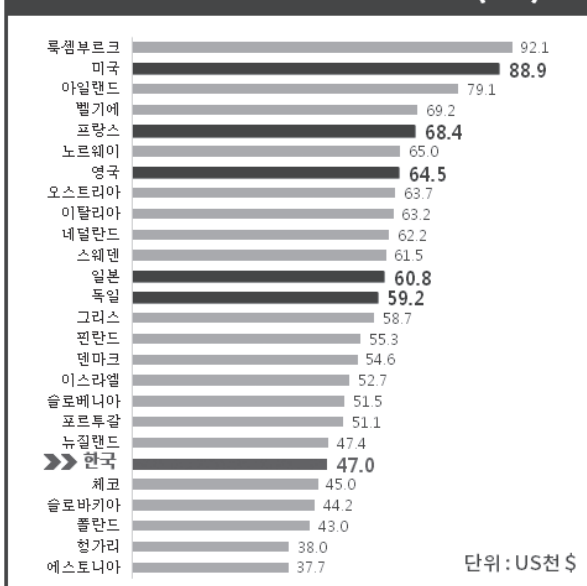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연구조사 각년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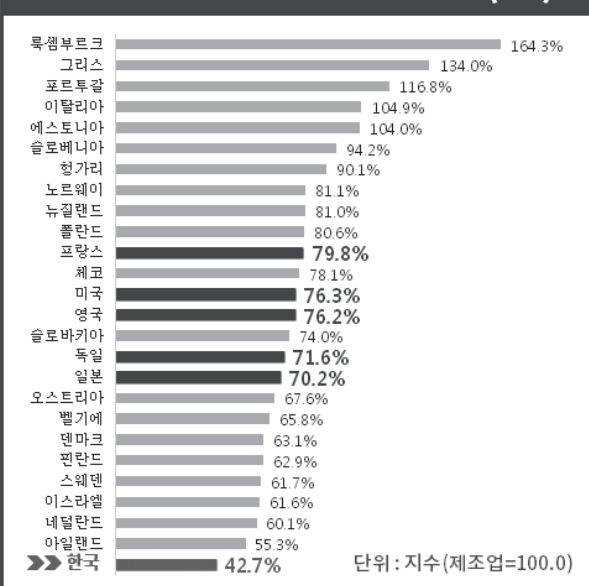
국제비교 해도 서비스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

서비스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13)



단위: US\$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13)



단위: 지수(제조업=100.0)

· 자료출처: 생산성본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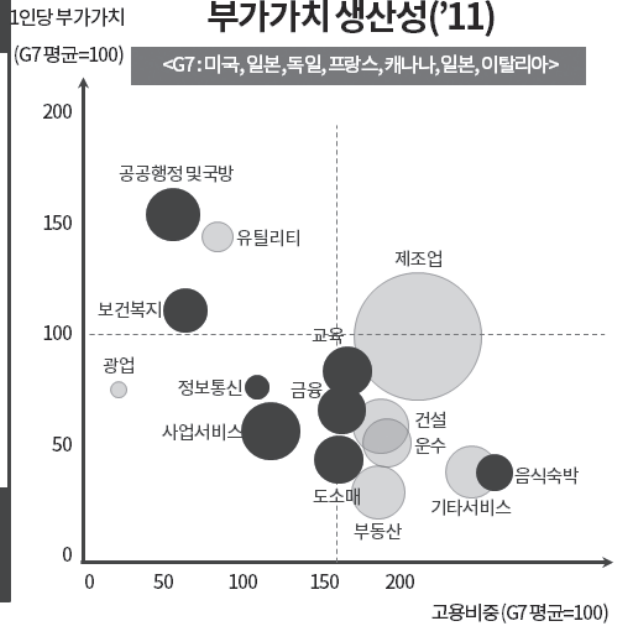
국제비교에 따른 업종별 특징

서비스업종대부분에서 G7국가대비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

- 高생산·低고용: 공공행정, 보건복지
- 低생산·低고용: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성장가능성높은분야)
- 低생산·高고용: 음식숙박, 도소매 (인력유입지속분야)
- G7평균 수준 생산·고용: 교육, 금융

제조업외에 서비스업은
우상향분면에 분포가 없음

G7대비 우리나라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성('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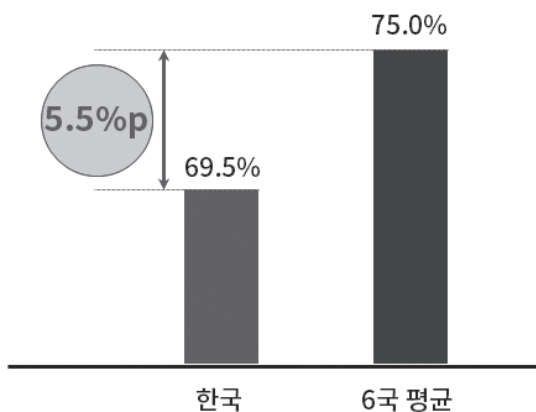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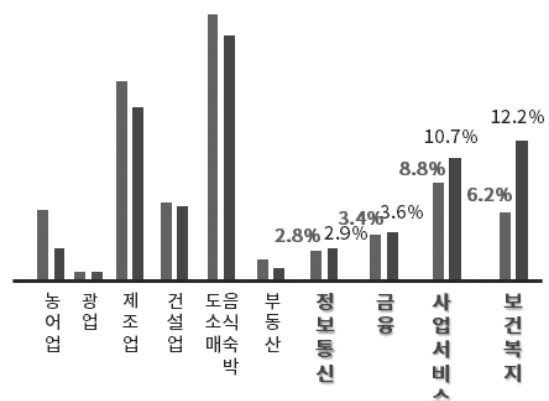
선진국과 고용비중 비교 (한국 vs. 미·영·독·프·일·이)

- ▶ 서비스업 고용비중 선진국 수준 대비 5.5%p 미달
-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의료분야 등이 뒤쳐져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13)



업종별 고용 비중('13)



13

I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II 기존 정책과 서비스산업 실태

III

발전 장애요인과 패러다임 전환

IV 추진과제

V 후속계획 (MILESTONE)

왜 그동안 발전이 안됐는가?

서비스인식

- 무형적 가치 평가절하
- 독립적 산업이 아닌 보조 산업으로 취급

이해집단 갈등

- 집단이기주의(내수중심 사고)
- 경쟁보다 보호와 지원에 안주

규제/낙후된 법제도

- 각종 규제로 기존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
- 진입장벽에 막혀 신사업도 애로

실행력 부재

- 타협과 소통 부재
- 국회 입법화 지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패러다임 전환

- 서비스업이 경제활성화의 'KEY'라는 인식 공유
-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격상
- 서비스산업 발전의 당위성을 '일자리 창출'에서 접근

기득권자와의 갈등, 진영논리 극복

- 단기적 이득 보다 미래 발전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특히, 의료·법률·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는 정책전환(경쟁제한 → 경쟁촉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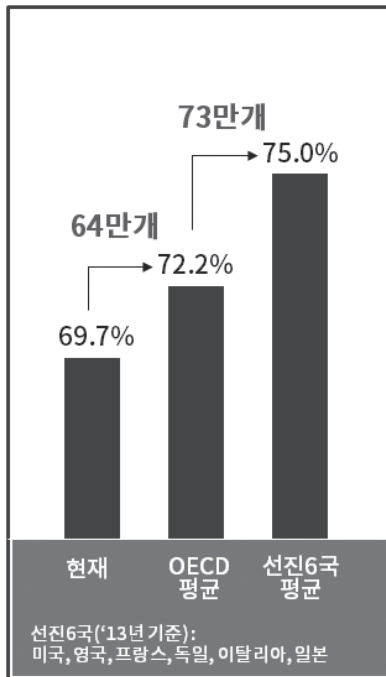
서비스산업 발전 = 일자리 창출 (1/2)

기존 산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규제철폐

- 보건·의료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외국인 병상제한(5%) 완화 → 외국인 환자 유치
 - 원격진료, 병원간 진료정보 공유 허용 → IT 융합 의료산업 활성화
- 관광·콘텐츠
 - 복합리조트 건립애로 해소, 숙박시설 신·증축 규제개선
- 교육
 - 학생선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자율확대, 실용·평생교육 활성화
- 법률·회계
 - 자격규제 완화, 칸막이식 업무영역 폐지 → 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품질은 제고

17

서비스산업 발전 = 일자리 창출 (2/2)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활성화

- 법·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신직업 창출
 - 홈스쿨 코디네이터, 사립탐정, 보조약사 등
- 국제비교를 통한 유망 신시장 발굴
 - Nightlife Culture(나이트클럽, 야시장 등): 시각바퀴 관광산업육성
 - 헬스케어: 음악치료사(美, 英), 노인장기요양매니저(日)
 - 애견산업: 동물보호보안관(英), 애견테라피스트(日)
-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미래유망직종
 - 당뇨상담사, 여행코디네이터, 요트중개인 등
- 기업활동 지원서비스 육성
 - 컨설팅, 디자인, 부동산등 고부가가치전문서비스분야

18

I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II 기존 정책과 서비스산업 실태

III 발전 장애요인과 패러다임 전환

IV 추진과제

V 후속계획 (MILESTONE)

19

서비스산업 인식 제고

현 황	대응방향	추진과제
무형적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 금유품관의 신용평가능력 향상 - 정부 조달시스템 개선 (최저가입찰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 무형가치인정, 산출중심 대가산정(서비스업종별) - 총액확정 계약건에 대한 사후관리정산금지 등 (국가계약법 준수)
독립산업이 아닌 보조산업으로 취급	- 제조업-서비스업 차별해소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R&D 투자 확대, 인적자원 개발 - 보건의료·교육 산업 육성 (기초분야는 공공서비스로, 선택분야는 자율경쟁 허용)

20

이해집단 갈등 해소

현 황	대응방향	추진과제
집단간 이해충돌 (의료, 교육시장 등)	- 글로벌 진출로 갈등완화 -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실현	-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점 발굴 (서비스 월드클래스 육성사업 등) - 대형화, 전문화 유도
경쟁보다 보호와 지원에 안주	- 과열경쟁 산업은 구조재편 - 과잉보호업종은 경쟁기제 마련	- 업종전환, 창업준비강화 -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신규진입 촉진)

21

규제와 낙후된 법제도 개선

현 황	대응방향	추진과제
각종 규제로 기존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	▶ 규제철폐로 자유롭게사업 펼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 규제의 기본틀 전환 ■ 사전규제 → 사후규제, 포지티브 → 네거티브규제
진입장벽에 막혀 신사업도 애로	▶ ■ 정책 조정기능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시현	▶ ■ 정책성과 피드백 강화 ■ 현장애로 지속발굴·개선

22

실행력 강화

현 황	대응방향	추진과제
타협과 소통 부재	▶ ■ 민관교류, 업종간 협의 확대 ■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정부-민간 공론의 장 마련 ■ 정책홍보 강화
국회 입법화 지연	▶ ■ 신속한 입법심사를 위한 여론 조성	▶ ■ 정책설명 및 교류 활성화 ■ 국회 토론회, 공청회 적극 개최 및 대응 (의원 포럼 운영 포함)

23

- I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II 기존 정책과 서비스산업 실태
- III 발전 장애요인과 패러다임 전환
- IV 추진과제

V 후속계획 (MILESTONE)

24

후속계획 (MILESTONE)

서비스산업 발전과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점검지수 개발·발표

- 핵심과제 및 진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여론환기 및 성과평가를 통해 추동력 확보

지표 설정 방향

- 환경지표와 성과지표를 함께 고려
- 관련 섹터(정부, 국회, 기업)의 역할, 기여도 등을 가시적으로 반영

25

서비스산업 환경 점검지수



세부항목(안)	모니터링 핵심요소
정책현황	• 지원법안통과현황 • 주요 현안의 진전상황
국민인식	• 서비스산업호감도 • 서비스이용수준및대가지불의사
애로해소	• 지원정책의실효성 • 제조업과차별철폐현황
발전성과	• 고용비중 • 제조업의서비스화 • 외자유치실적

※ 하반기 첫 조사 이후 세부기준 및 목표설정 예정

2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